

창원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2가단1024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기술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김능철

변 론 종 결 2022. 6. 10.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A(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30. 체결된 매매계약의 부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20. 11. 30. 접수 제756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A(D생) 사이에 2020. 11.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부인한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기술보증기금은 2017. 4. 27.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F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음에 있어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기한 2018. 4. 27.(이후 2021. 4. 23.로 연장되었다), 보증금액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한 소외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2020. 11. 12.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기술보증기금은 2021. 1. 15.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F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181,921,020원(= 대출원금 180,000,000원 + 이자 1,921,02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금(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 채권은 2021. 1. 27. 기준으로 181,746,150원(= 181,921,020원 - 회수 처리액 628,280원 + 대지급금 453,410원)이다.

다. 피고는 2020. 11. 30. A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1. 30.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기술보증기금은 2021.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A은 2021. 8. 30. 창원지방법원 2021하단99호, 2021하면99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고, 이 사건 청구취지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부인권의 행사로써 채무자의

재산이 원상으로 회복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97조 제1항), 부인권은 소의 제기 뿐만 아니라 항변에 의해서도 행사할 수 있는바(제396조 제1항), 이때 ‘부인권을 소에 의하여 행사한다.’는 것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적인 효과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구하는 청구와 원상회복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의 부인권 행사가 인정된다면 부인권 행사의 형성적 효과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하게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원상회복판결을 받게 됨으로써 원고는 소 제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인의 선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9213 판결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김해시,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기준 177,178,600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 181,746,150원(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상태였다) 외에 기업은행, H, I카드, F은행, J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 보증채무 등으로 1억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이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일탈시켜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고, 당시 A의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A에게도 책임재산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411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3. 25. K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A이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피고는 A, K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의 K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K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양도담보받되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A 명의로 2015. 1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K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K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상 A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다.

2) 판단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와 K 간 양도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즉 양도담보권자의 명의만을 A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K를 양도담보제공자, 피고를 실질적 양도담보권자로, A을 형식상 양도담보권자인 소유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피고는 A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자인 기술보증기금 및 그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원고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들어 대항할 수 없다. 또한 양도담보목적물은 대외적으로 양도담보권자의 집행재산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A 명의의 2015. 12. 1.자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A의 책임재산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의 부인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상실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강진명

1)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중 청구취지 중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기재를 위와 같이 본다.

2) 한편, 피고의 답변서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은 K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보증인으로서 K에 대한 A 자신의 구상금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뒤(이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A의 책임재산이 된다), A이 피고에 대한 자신의 2015. 3. 17.자 대여금 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처럼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행위는 편파행위로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